

남해군 상수도 현대화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공고

1. 협력업체 지정목적 : 남해군 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사업대상지 내 수도 시설물의 누수사고 및 수도시설물 손괴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긴급복구공사 시행을 위한 복구업체 지정

2. 협력업체 지정자격요건

- 가. 등록 신청일 현재 남해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
- 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다. K-water에서 지정한 기본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3. 지정절차

- 가. 지정신청서 배부기간 : 2019. 4. 22 ~ 4. 28
- 나. 지정신청서 접수기간 : 2019. 4. 29 ~ 5. 8
- 다. 등록업체 평가 : 2019. 5. 9 ~ 5. 15
- 라.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19. 5. 17(개별통보)
- 마.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본부 남해현대화사업소
- 바. 제출자료 : 지정신청서에 명기한 자료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 제출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인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

4. 협력업체 지정기준

- 한국수자원공사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후, 70점 이상인 업체 중 높은 점수 순으로 2개 업체 선정(단, 70점 이상 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고득점순으로 지정)

5. 협력업체 운영

- 가. 남해군 현대화사업소 업무처리방안에 의한 운영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현대화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담당자 : 유세연 과장 (전화 055-268-7162, Fax 042-629-4930)
 - 2)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28 남해KT 2층 한국수자원공사 남해 현대화사업소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신청서

귀 공사의 “남해군 상수도 현대화사업 긴급복구 협력업체”로 지정신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사명			
2. 대표자			
3. 전문공사업종			
4. 주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년도			
7. 해당부문 종사기간			
8. 기술인력보유현황			
기술자	인원수	비고	
. 책임기술자 . 배관공 . 용접공 . 인부 . 계		토목(산업)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 용접기능사 이상 -	
9. 장비보유 현황			
장비명	규격	대수	비고
※장비보유 현황은 상세하게 기술(등록증 사본 첨부) ※전문공사업종 신고필증 사본, 회원수첩 사본 첨부 ※기술자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사본 첨부 ※기타 등록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등록업체 평가에 필요한 자료 첨부 -최근 3년간 상수도공사실적자료(세금계산서, 발주처 확인서 등) -전년도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없는 업체는 세금계산서 제출)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이 신청서 작성시 기간계산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 지정신청서제출안내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신청서는 반드시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 신청서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 신청서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 협력업체 지정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작성회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협력업체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면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하며, 협력업체 선정 후 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당해 협력업체 지정을 취소한다.
-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배점하지 않으며 제출 기한 후 증빙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우리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서의 크기는 A4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신청서 작성시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없음” 으로 기재한다.

붙임 2 긴급복구 협력업체 신청 자격요건

기본 인력 및 장비

기본인력

기술자명	단 위	수 량	비 고
1. 책임기술자	인	1인 이상	토목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2. 배관공	인	2인 이상	

기본장비

장비명	단위	규 격	수 량	비고
1. 굴삭기	대	0.12m ³ 이상	1이상	미보유시 임대계약서
2. 발전기	대	15kW	1이상	미보유시 임대계약서
3. 양수펌프	대	2"이상	2이상	
4. 착암기	대	콤푸레사	1이상	
5. 콘크리트컷터	대	포장절단용	1이상	
6. 관절단기	대		1이상	
7. 부단수천공기	대	1.5ton	1이상	
8. 플레이트콤팩터	대	1.5ton	1이상	
9. 작업차량	대	트럭 (1톤 이상)	1이상	미보유시 임대계약서
10. 통신장비	대	휴대폰	1이상	
11. 안전장구	개	안전헬스	10이상	
	식	안전모 등	1	

붙임 3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심사기준

긴급복구 협력업체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업체능력	공사 실적	최근 3년간 상수도공사 실적합계액	○ 평가방법 : 아래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		50																																		
	신용도	재정상태 전실도	1) 자본금 : 아래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 2) 부채비율 : 아래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		5 5																																		
2.인력보유	적정 기술인력 보유현황	당해사업에 필요한 적정 기술인력 보유현황	○ 보유인원수에 기술자격계수를 곱하여 산출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보유인력</th> <th colspan="2">기술자격계수</th> </tr> </thead> <tbody> <tr> <td>- 토목기사1급 이상</td> <td></td> <td>4점</td> <td></td> </tr> <tr> <td>- 토목산업기사</td> <td></td> <td>3점</td> <td></td> </tr> <tr> <td>- 배관기능공</td> <td></td> <td>2점</td> <td></td> </tr> <tr> <td>- 작업인부</td> <td></td> <td>1점</td> <td></td> </tr> </tbody> </table>		보유인력		기술자격계수		- 토목기사1급 이상		4점		- 토목산업기사		3점		- 배관기능공		2점		- 작업인부		1점		20														
보유인력		기술자격계수																																					
- 토목기사1급 이상		4점																																					
- 토목산업기사		3점																																					
- 배관기능공		2점																																					
- 작업인부		1점																																					
3.장비보유	적정 장비 보유현황	당해사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보유현황	○ 보유장비수에 계수를 곱하여 산출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보유장비</th> <th>규격</th> <th>계수</th> <th>최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7">지방</td> <td>- 백호</td> <td>0.12m³이상</td> <td>3점</td> <td>3점</td> </tr> <tr> <td>- 발전기</td> <td>15kW 이상</td> <td>2점</td> <td>8점</td> </tr> <tr> <td>- 작업차(트럭)</td> <td>1톤 이상</td> <td>2점</td> <td>4점</td> </tr> <tr> <td>- 콘크리트 커터</td> <td>포장절단용</td> <td>2점</td> <td>2점</td> </tr> <tr> <td>- 플레이트컴팩트</td> <td>1.5ton</td> <td>2점</td> <td>2점</td> </tr> <tr> <td>- 양수기</td> <td>2"이상</td> <td>1점</td> <td>5점</td> </tr> <tr> <td>- 부단수천공기</td> <td></td> <td>1점</td> <td>1점</td> </tr> </tbody> </table>		구분	보유장비	규격	계수	최대	지방	- 백호	0.12m ³ 이상	3점	3점	- 발전기	15kW 이상	2점	8점	- 작업차(트럭)	1톤 이상	2점	4점	- 콘크리트 커터	포장절단용	2점	2점	- 플레이트컴팩트	1.5ton	2점	2점	- 양수기	2"이상	1점	5점	- 부단수천공기		1점	1점	20
구분	보유장비	규격	계수	최대																																			
지방	- 백호	0.12m ³ 이상	3점	3점																																			
	- 발전기	15kW 이상	2점	8점																																			
	- 작업차(트럭)	1톤 이상	2점	4점																																			
	- 콘크리트 커터	포장절단용	2점	2점																																			
	- 플레이트컴팩트	1.5ton	2점	2점																																			
	- 양수기	2"이상	1점	5점																																			
	- 부단수천공기		1점	1점																																			
계					100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및 배점표

등급별 배분		참여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배분업체수																		배점비 (%)	배점별 점수분포 현황			
등급	배분율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5점	10점	50점
수	10	-	-	-	1	1	1	1	1	1	1	1	1	1	2	2	2	2	2	2	100	5.0	10	50
우	20	1	1	1	1	1	2	2	2	2	2	2	3	3	3	3	3	4	4	4	90	4.5	9	45
미	40	1	1	2	1	2	2	2	3	4	5	6	5	6	6	6	7	7	8	8	80	4.0	8	40
양	20	-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70	3.5	7	35
가	10	-	-	-	1	1	1	1	1	1	1	1	1	1	1	2	2	1	1	2	60	3.0	6	30

남해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긴급복구공사 시행 협약서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남해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하 현대화사업)”의 수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본부장(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과 ○○○ 사장(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간에 긴급복구공사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사고”란 현대화사업 사업대상지 수도시설에서 누수로 인해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의 기능적 회복이 일반적인 점검 정비 또는 단순 보수작업으로는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긴급복구공사”란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또는 현대화사업 사업대상지 내 수도시설물의 파손 및 망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3. “긴급복구체제”란 수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신속하게 긴급복구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유지해야 할 인력·장비·자재 등의 최소 요건으로서 지정공고에서 정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할 것을 지시한 경우
2. 수급인의 긴급복구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각종 현황을 확인하거나 수급인을 지도하는 경우.

제4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년 월 일)로부터 0년(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1회에 한해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긴급복구체제의 유지 등)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긴급복구체제를 유지하도록 확인 및 지도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제4조에서 정한 협약기간내 협력업체 지정요건에 따른 인력 및 장비를 항시 보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긴급복구공사에 사용될 주요자재에 대하여 사전에 도급인과 협의하여 구비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제1항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지도를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신속히 긴급복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 ⑤ 도급인은 제2항의 협력업체 지정요건 변동사항 발생으로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수급인의 긴급복구공사 시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⑥ 도급인은 수도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긴급통신망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작업의뢰 및 응급조치 등) ① 도급인은 수도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급인에게 즉시 긴급복구공사의 시행을 요청하면서 그에 따른 작업의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작업의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수급인은 제1항의 요청을 받는 즉시 가옥침수, 구조물 손괴, 교통마비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도수로·안전철타·조명설비·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완료한 후 신속하게 긴급복구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복구공사의 시행) ① 수급인은 긴급복구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현장대리인이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② 수급인은 긴급복구공사 시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수급인은 긴급복구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수급인은 인근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등 긴급복구공사로 인한 각종 사고 및 민원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수급인은 작업상황, 장비 및 인력투입, 자재수급상황 등이 명기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도급인의 조치사항) 도급인은 긴급복구공사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승인·협조·대외홍보 등 지원을 위하여 각종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재시공 등의 제재) 수급인이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할 때 부적절한 공법을 사용하거나 태만하게 시공하는 등 제재가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재시공 요구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신고서 등 제출) ① 수급인은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시공 관련 사진 등이 첨부된 준공신고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수도사고의 원인, 긴급복구공사에 활용된 기술 및 변경도면과 관련된 자료 3부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작성할 때 재료의 성분분석 등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준공검사 및 대가지급) ① 도급인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준공신고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수급인의 대가지급청구서(도급인이 정한 긴급복구공사품셈에 기초한 것을 말한다)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① 수급인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긴급복구공사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1.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 5년

② 수급인은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 대가에 긴급복구공사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증권으로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는 도급인이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상하수도 구조물 : 5%
2. 상하수도 관로 : 3%

③ 수급인은 하자보수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당해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한 보고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등의 책임) 수급인은 긴급복구공사 및 하자보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4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상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2시간 이상 늦게 공사현장에 도착한 경우가 2회 이상일 때
 4.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2시간 이상 늦게 긴급복구공사가 지연된 경우가 2회 이상일 때
 5. 그 밖의 사정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 ② 도급인은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의 통지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의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결과를 수급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 도급인은 신공법을 소개하거나 수급인 간에 정보교류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목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16조(협약의 변경) 도급인과 수급인은 서면합의로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의 효력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위와 같이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도 급 인 K-water 경남부산본부장 ○ ○ ○ (인)

수 급 인 ○ ○ ○ 대 표 ○ ○ ○ (인)

[별표 1] 협력업체 지정취소 요건

등록취소 요건

구 분	등록취소	확인방법	비고
1.누수복구지시 불이행	1회 불이행시	정당한 사유없이 누수복구지시에 불응한 경우	
2.복구작업 출동지연	2시간이상 2회 지연시	고의로 출동을 회피하거나 지연한 경우 - 복구 지시한 시간부터 현장도착 시간까지를 기준으로 이동거리 및 교통상황을 감안하여 고의성을 판단한다.	
3.복구작업 지연	2시간 이상 2회 지연시	고의로 복구작업을 지연한 경우 -고객 단수통수시 계획된 복구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복구지연 여부를 판단한다.	
4.자격요건 상실시	1항에서 정한 협력업체 지정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점검정비업체로서 협력업체로 지정된 후 점검정비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표 2] 경고·주의 카드 발급에 따른 조치사항

경고(주의) 카드 등 발급에 따른 조치 사항

구분		판정기준	조치사항	비고
주의	1. 재시공 (부적정 공법 및 불량자재 등)	불이행 또는 고의적 회피	주의 2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2. 긴급복구공사관련 민원처리	불이행 또는 고의적 회피	주의 2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3. 하자보수	불이행 또는 고의적 회피	주의 2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4. 고의적 정산물량 증가	작업내용과 비교시 고의적 물량 증가	주의 2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경고	1. 재시공 및 하자보수	하자보수 불이행 및 고의적 회피에 따른 민원 또는 사고 발생	경고 1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2회 발생시 협약해지
	2. 고의적 복구작업 출동지연	고의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2시간 늦게 현장도착	경고 1건당 작업의뢰 5회 제한	2회 발생시 협약해지
	3. 고의적 복구작업 지연	고의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2시간 늦게 현장도착	작업의뢰 5회 제한	2회 발생시 협약해지
	4. 건설폐기물 무단 폐기	건설폐기물 처리법규 위반	작업의뢰 5회 제한	3회 발생시 협약해지

붙임 5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각서 양식

하자보수보증금 납부각서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일금 원정(W)
3. 하자보수보증금액 : 일금 원정(W)
4.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보증기간 : (제차년도 , 총공사,총용역,물품)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년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면제에 따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지시에 따라 상기 하자보수보증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조건 없이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붙임 6 폐기물 처리절차

